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8월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2015. 7. 2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며,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통일, 공정성 확보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하였던 심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(안 제3조, 제4조)
- 나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요율 조정대상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사용하는 경우 신설 (안 제27조제4항제12호)
- 다.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·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초과상승분에서 100분의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 (안 제33조)

- 라.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 
변상금 징수유예기간 신설 (안 제92조의2)
- 마.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명칭이 “경리관”  
에서 “재무관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및 관련 조례 일괄 개정 (안 제65  
조, 제66조제2항, 제67조제2항, 제74조제항, 부칙 제2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 
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)에게  
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 
<http://www.sdm.go.kr/> 입법예고란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 
및 물품관리 조례」 (안)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○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재무과  
(우편번호:03718)

○ 기타 문의사항 : ☎ (02)330-1996, FAX (02)330-1429